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성명(법인명) 서 협 동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1945. 08.15
------------------	-----------------------------

설립신고인은
이사장이 아닌 발기인 대표를 기입합니다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전화번호
010-1544-5077

신고내용

설립동의자 수(명)

→ 발기인도 포함됩니다

출자금 납입총액(원)

→ 출자납입을 약정한 총액을 적습니다

창립총회 개최일

조합명(연합회명) 상담지원센터 협동조합

전화번호
02-1544-5077

소재지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법인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이 유 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23456-1789012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번호
02-383-8380

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제1항 각 호 해당 여부

해당[]

해당되지 않음[✓]

이 둘에 해당

되지 않아야

설립신고가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겸직 여부

해당[]

해당되지 않음[✓]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제7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신고인 서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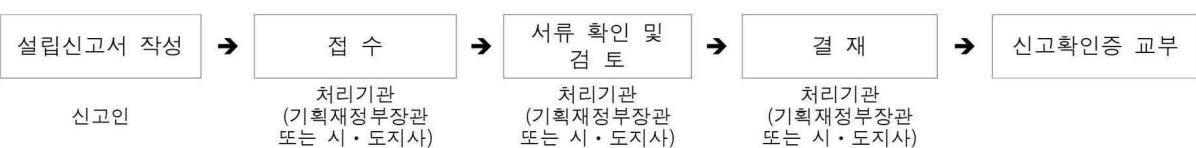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귀하

기획재정부장관, 시·도지사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210mm×297mm [백상지 80g/m²(재활용품)]